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임혜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
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
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(법률 제18646호, 시행 2022. 6 .29.)됨에 따라
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(안 제17조의2, 안 제27조의2)

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
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
있는 근거를 신설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민연금관리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등과
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’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3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

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”는 「국민연금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가입자의 소속기업명, 성명 및 자격의 취득(고용)·상실(고용종료) 등 부과·징수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.

제2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
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
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
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
2.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
관한 사무
3. 법 제14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
4. 법 제14조의5에 따른 자료요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</u> <u>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‘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’</u> <u>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u>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<u>국민건강보험공단</u> 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<u>따른 근로복지공단</u> 3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 <u>연금관리공단</u>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서 “대 <u>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</u> <u>또는 자료”는 「국민연금법」,</u> 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고용보</u> <u>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</u> <u>법」에 따른 가입자의 소속기업</u> <u>명, 성명 및 자격의 취득(고용)</u> <u>· 상실(고용종료) 등 부과·징</u> <u>수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</u> <u>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u>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법</u> <u>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</u> <u>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</u>

관이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4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4조의5에 따른 자료요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732